학교폭력 예방 교육

생활안전부

학부모 연수자료 p33

- 학교폭력 예방
-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
- 학생 인권 교육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

- 1. "학교폭력"이란 학교 내외에서 **학생을 대상**으로 발생한 상해, 폭행, 감금, 협박, 약취ㆍ유인, 명예훼손ㆍ모욕, 공갈,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, 따돌림, 사이버 따돌림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**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**를 말한다.

- 1의2. "따돌림"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**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**를 말한다.

- 1의3. "사이버 따돌림"이란 인터넷,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,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,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**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**를 말한다.

학교폭력의 정의

- **학생**을 대상으로
- 신체 · 정신 또는 재산상의 **피해** 수반 행위
- 상대방이 **고통**을 느끼도록 하는 **모든 행위**



놀리는 행위 = 학교폭력(모욕)에 해당



신체에 타격 = 학교폭력(상해)에 해당

-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목격할 경우

- **즉시, 싸우는 친구를 말리거나**
- 현장에서 벗어나 **선생님에게 신고**

- 친한친구가 싸우고 있다면 친한친구를 잡아 주세요
- 현장에서 **구경하다 가해학생으로 같이 지목**될 수도 있습니다



상대가 욕을해서 상대를 공격하게 되면 = 쌍방처리

신체에 타격 = 학교폭력(상해)에 해당

- 일부 보호자가 누군가 때리면 같이 때리라고 교육
- **공격 방어가 교차하는 싸움은 정당방위 인정되지 않음**

- 자신을 **보호하는 방어적 행동만 정당방위로 인정**
- 문제 발생시 **올바른 대응** 및 **학교에 처리 요청**이 필요

- 작은 법익(인격, 재산)을 방어하기 위해 큰 법익(신체)에 대해 반격을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음.

- 상대가 **욕설을 해서 신체타격을 하면 정당방위 불가**
  - 신체 타격의 결과가 더 클 경우 더 큰 처벌을 받을수 있음

- 상대가 욕설을 해서 **똑같이 욕설을 하면 쌍방 처리**

새롭게 발생 예상되는 학교폭력사례

- 2023.01.30. 실내마스크 해제
- 마스크 해제를 반기는 학생도 있지만
- **"부끄럽다", "얼굴을 보여주기 싫어요"**라는 걱정의 목소리
- "섣불리 마스크를 벗으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"

- **마스크를 쓰는것, 벗는것**과 관련 아이들 사이 갈등 발생 소지
- **외모에 대한 평가**로 인한 갈등 발생 소지

학교폭력 예방 방법 (보호자 관찰)

- 이유없이 **학교를 가고 싶지 않음**
- 이유없이 몸이 **아프다는 핑계**가 늘어남
- 특별한 사유 없이 **조퇴를 하는 횟수**가 많아짐
- 평소 같이 지내던 **친구들이 바뀜**
- **친구관계에 대한 대화시 예민한 반응**

학교의 사안처리 - 학교장 자체 해결제

- 경미한 사안의 경우 대부분 학교장 자체해결제로 처리
- 학교장 자체해결제 동의서 피해학생측 서명 확인
- **생활기록부에 기재 X**

학생 갈등 또는 경미한 학교폭력 발생시
학교장 자체해결제를 적극 이용

학교의 사안처리 – 학교장 자체해결제

- **2주 이상**의 신체적·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**진단서**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
- **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**된 경우
- 학교폭력이 **지속적**이지 않은 경우
- 학교폭력에 대한 **신고, 진술,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**가 아닌 경우

위 4가지에 모두 충족되면 학교장 자체해결제 가능

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방법 – 심의위원회

- 학교장 자체해결제에 **요건에 미충족**하거나
- 학교장 자체해결 **학교 결정에 피해측(학생/보호자) 미동의** 할 경우
- **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(교육청)**로 이관 가능

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방법 – 신고체계

- **학교 모든 교사(담임교사, 학교폭력 담당교사 등)**
- 학교내 학교폭력 신고함
-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
- 학교 전담 경찰관

신속한 신고는 학교폭력 해결의 지름길

신속한 신고는
학교폭력
해결의 지름길

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

좋은 세상을
만드는
가장 쉬운 방법
입니다